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193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59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9조의 제목 "(보고 및 출입·검사)"를 "(통보·보고 및 출입·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도시농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공영도시 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업무규 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를 "공영도시 농업농장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 없이 변경할"을 "통보하지 아니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를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공장의 개설기준,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0 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있다.

제4조(「동물보호법」의 개정)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94조제4항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말산업 육성법」의 개정)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로 한다.

제6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산림보호법」의 개정)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5조의9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를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9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를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0조(「축산법」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2조의13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제59조제5항·제116조제2항·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조 중 「축산법」 제28조제3항·제42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11)) -) 4]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③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	
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
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
	<u>수</u>)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5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	
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u>	<u>통</u>
<u>고</u> 하여야 한다.	<u> </u>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3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하였	
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	<u>통보</u>

여야 한다.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생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2
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u>	<u>통</u>
<u>고</u> 하여야 한다.	<u> </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 <u>(보고 및 출입·검사)</u> ①	제119조 <u>(통보·보고 및 출입·검</u>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	<u>사</u>) ①
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	<u>통보</u>
다.	<u>.</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지사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 도지사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 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 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 또 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 구할 수 있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 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 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하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 ----- 공영도시농업 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 | 농장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u>승인 없이 변경할</u>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 을 폐쇄하려면 <u>폐쇄 예정일 3개</u> <u>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u> <u>을 받아야</u>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
<u>o</u> }
<u>통보하지 아니할</u>
⑤
<u>시·도지사는 농</u>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
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공영도시농업공장의 개
설기준,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
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
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륟	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u>할 수 있다.</u>
<u>④·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 ④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	5
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	
군・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	
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고</u> 하	<u>통보</u>
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u> , 시장·군수·구	④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u>
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u>· 구청장</u>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	
을 포함한다)에게 <u>보고</u> 하여야	<u>통보</u>
한다.	
<u><신 설></u>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
	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

립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고・검사) ① 농림축산	제26조(보고·검사) ①
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	
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u>하게</u>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
	하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
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	②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	l
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
원회) ① (생 략)	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	②
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통령</u>	<u>해당 지</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u> 자치단체의 조례로</u> 지방자치단	에 따라
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	
역지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	3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	
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u>시·도를</u>	<u>시·도지</u>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	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
다.	<u>여</u> 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 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정 • 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 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 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 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 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 산림청장은 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지정목적, 위치 · 면적 등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

③ ~ ⑥ (생 략) 제11조(입장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정한다.

	<u>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
	음)
]	②
]	
<u>_</u>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②	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	
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	
등록 현황을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
립) ① (생 략)	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	②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	
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